

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의안 번호	3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8. 4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'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제146회 ('98. 3. 6) 임시회의에서 변경 확정된 바 있으나
- 주요사업의 추가 시행으로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골자

[재산의 취득]

-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-
- 위 치 :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66 (도립 옥천전문대학 인접부지)
- 규 모 : 2,645.0㎡ (800평)
- 시 기 : '98 상반기
- 취득가액 : 800,000천원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

4. 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(안) 『 별첨 』

5. 관계법령 발췌 : 『 별첨 』